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 1. 건 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김*규	1962.06.10.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으로 수급자격 불인정	동 서류를 2024년 1월 18일 1월 26일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불가(폐문부재)	경기도 안성시 발화대2길 (이하 생략)

- 4. 공고기간: 2024. 2. 7. ~ 2024. 2. 21.(15일간)
- 5. 기타사항은 평택지청 안성고용센터 유진호(☎031-686-17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